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3. 11.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이지정 관련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 확대
 - 대형마트 범위
 -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규모점포 포함
 - 영업시간 제한 범위
 - 오전 0시~오전 8시 → 오전 0시~오전 10시

- 의무휴업 범위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매월 공휴일 중 2일

※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 영업제한 적용 면제조건

- 연간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시 → 55%로 상향

○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 인접지역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부터 안제12조까지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에 규정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고,

- 안 제14조의2제1항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범위를 확대하였고,

· 영업시간 제한 범위 : 오전 0시~오전 8시 → 오전 0시~오전 10시

· 의무휴업 범위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매월 공휴일 중 2일

※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제외 점포의 기준을 변경 하였음

·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세부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0 호
----------	---------

제출연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 확대

○ 대형마트 범위

-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규모점포 포함

○ 영업시간 제한 범위

- 오전 0시~오전 8시 → 오전 0시~오전 10시

○ 의무휴업 범위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매월 공휴일 중 2일

※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 영업제한 적용 면제조건

- 연간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시 → 55%로 상향

다. 전통사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 인접지역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8조제4항, 제12조의2, 제13조의3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10.4~10.24, 20일간) : 의견있음

연번	법인 및 단체 등	의견 주요내용	부서 검토의견 등
1	타임스퀘어내 이마트(영등포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 일괄 적용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시 됨	2013.1.23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은 대규모 점포내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대형마트에 포함함에 따라 규제의 차등적용은 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음
2	코스트코홀세일(양평점)	개정조례는 영업규제의 대상이 될 각 유통업체의 선정기준과 규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서 정하지 않음	조례조항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규제대상 및 범위로 명시하였으나, 유통업체별 세분화 규제는 법 개정취지 및 소비자의 혼란 등으로 공익달성에 적절치 않음

(2) 규제심사 : 없 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 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 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

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 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등포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등포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

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영등포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후생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영등포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영등포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영향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0조(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 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영등포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 2. 의무휴업일 : 매월 2일(공휴일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5에 따른 협의회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 1.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 2.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일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u></p> <p>① <u>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u></p> <p>② <u>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된다.</u></p> <p>③ <u>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영등포구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u> 2. <u>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개정 2011.09.29></u> 3. <u>소비자단체 대표</u> 4. <u>상공회의소 관계자</u> 5. <u>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u> 6. <u>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7. <u>그 밖에 영등포구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④ <u>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u></p> <p>⑤ <u>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u></p>	<p><u><삭 제></u></p>

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9조(협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회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회의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삭 제>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
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
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2.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신설〉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
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
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삭제〉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
은 경우에는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
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대
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
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
항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③·④·⑤·⑥ (생략)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② (생략)

〈삭 제〉

②·③·④·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 55퍼센트 -----
-----.

1. ----- 오전 10시-----

2. ----- 매월 2일(공휴일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